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및 등급표준화 검사〉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39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및 등급표준화 검사 ...	3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 및 권장품질표시	6
나. 등급표준화 검사 개요	12
다. 조문별 검토	15
1) 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표준규격품 등 표시의무 신설	15
2) 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등급표준화 검사	25
3) 도매시장법인 등의 농수산물 수탁 거부금지 등 사유 추가	32
2. 부칙	3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5. 2.
3. 회 부 일 : 2025. 5.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환경 및 웰빙 문화 확산으로 정확하게 표기된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공영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량미달, 속박이, 개수조작 등 불량 출하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표준화 검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에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출하가 가능하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하여 표준규격 등 출하 농수산물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급표준화 검사를 법률에 규정하여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를 적용하

는 한편,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 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및 등급표준화 검사

개정안은 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① 표준규격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등급표준화 검사를 하도록 하며, ③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도매시장법인 등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안 제90조, 안 제3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신 설>	3의2. 제38조의3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38조의3(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등급표준화 검사 등) ①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 및 제5조의2에 따른 권장품질표시(이하 “표준규격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표준

현 행	개 정 안
	<u>규격등 품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 <u>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등급표준화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등급표준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u> <u>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u> <u>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 <u>⑥ 제3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개정안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2.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3.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8조의2제2항 또는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등에 미달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 3의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신설> 3의2.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3. 제38조의2제2항 또는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등에 미달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 3의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4.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5.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6.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 및 권장품질표시

농수산물은 ‘식품’으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영업소 명칭·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¹⁾

다만, 농수산물의 표시사항은 식품으로서 기본적인 개요와 안전사항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표시된 사항만으로는 농수산물의 실제 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한 자율적인 ‘품질’ 등의 표시제도로써, ① 제5조에서 ‘표준규격’ 제도,²⁾ ② 제5조의2에서 ‘권장품질표시’ 제도³⁾를 규정함.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당도 등 품질을 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한다)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③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 등의 공정과 품질관리의 특성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표시제도가 아닌,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따른 등급판정⁴⁾·검사⁵⁾ 등의 제도가 적용됨.

표준규격은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으로 이루어지는데,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혹은 별도로 정한 포장재료·방법·설계 등에 따르는 것임.⁶⁾

4) 「축산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표준규격의 제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7.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한편,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에 따라 정한 규격에 따르는 것임.⁷⁾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산림청에서 각각 농산물(임산물·축산물 제외) 82개 품목, 수산물 10개 품목 및 임산물 36개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을 고시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준규격 고시 농산물 현황 】

연번	구분	품목수	세부품목
1	과실류	11	① 사과, ② 배, ③ 복숭아, ④ 포도, ⑤ 감귤, ⑥ 금감, ⑦ 매실, ⑧ 단감, ⑨ 자두, ⑩ 참다래, ⑪ 블루베리
2	채소류	25	① 마른고추, ② 고추, ③ 오이, ④ 호박, ⑤ 단호박, ⑥ 미니단호박, ⑦ 가지, ⑧ 토마토, ⑨ 방울토마토, ⑩ 송이토마토, ⑪ 참외, ⑫ 딸기, ⑬ 수박, ⑭ 조롱수박, ⑮ 멜론, ⑯ 피망, ⑰ 파프리카, ⑱ 양파, ⑲ 마늘, ⑳ 무, ㉑ 결구배추, ㉒ 양배추, ㉓ 당근, ㉔ 브로콜리, ㉕ 비트
3	서류	2	① 감자, ② 고구마
4	특작류	5	① 참깨, ② 피땅콩, ③ 알땅콩, ④ 들깨, ⑤ 수삼
5	버섯류	5	① 느타리버섯, ②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③ 양송이버섯, ④ 팽이버섯, ⑤ 영지버섯
6	곡류	14	① 쌀, ② 찰쌀, ③ 현미, ④ 보리쌀, ⑤ 좁쌀, ⑥ 울무쌀, ⑦ 콩, ⑧ 팥, ⑨ 녹두, ⑩ 찰수수쌀, ⑪ 찰기장쌀, ⑫ 메밀, ⑬ 옥수수(팝콘용), ⑭ 옥수수쌀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표준규격의 제정) ③ 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 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

연번	구분	품목수	세부품목
7	화훼류	20	① 국화, ② 카네이션, ③ 장미, ④ 백합, ⑤ 글라디올러스, ⑥ 튜울립, ⑦ 거베라, ⑧ 아이리스, ⑨ 프리지아, ⑩ 금어초, ⑪ 스타티스, ⑫ 칼라, ⑬ 리시안시스, ⑭ 안개꽃, ⑮ 스토크, ⑯ 공작초, ⑰ 알스트로메리아, ⑱ 포인세티아, ⑲ 칼랑코예, ⑳ 시클라멘
총계		8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5. 5. 15.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표준규격 고시 수산물 현황 】

연번	구분	품목수	세부품목
1	수산물 (신선어패류)	3	① 생굴, ② 바지락, ③ 꼬막
2	수산가공품 (냉동품 포함)	7	① 북어, ② 굴비, ③ 마른문어, ④ 새우젓, ⑤ 멸치젓, ⑥ 냉동오징어, ⑦ 간미역
총계		10	-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수산물 표준규격」 [별표 5] 수산물의 종류별 등급 및 포장규격

【 산림청: 표준규격 고시 임산물 현황 】

연번	구분	품목수	세부품목
1	수실류	13	① 밤, ② 견대추, ③ 생대추, ④ 뽕은 감(생감), ⑤ 홍시, ⑥ 콧감, ⑦ 깎갓, ⑧ 호두, ⑨ 은행, ⑩ 다래, ⑪ 복분자, ⑫ 산딸기, ⑬ 석류
2	버섯류	7	① 건표고, ② 생표고, ③ 송이, ④ 건꽃송이, ⑤ 생꽃송이, ⑥ 건목이, ⑦ 생목이
3	산나물류	10	① 건취나물, ② 생취나물, ③ 건고사리, ④ 생고사리, ⑤ 더덕, ⑥ 생도라지, ⑦ 두릅(삼수두릅, 잎두릅), ⑧ 죽순, ⑨ 건고려엉겅퀴(곤드레), ⑩ 생고려엉겅퀴(곤드레)
4	약용류	4	① 건오미자, ② 생오미자, ③ 건산수유, ④ 건구기자
5	약초류	1	① 산양삼
6	수목부산물류	1	① 수액
총계		36	-

자료: 산림청고시, 「임산물 표준규격」 [별표 5] 임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

고시된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에는 각 고시에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표준규격품문구·품종·등급·식품안전문구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외의 사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 표준규격품과 비표준규격품(일반품)의 표시사항 비교 】

표준규격품(표준규격품 문구 있음)			
표준규격품			
품목	사과	생산자 (연락처)	사과작목반 홍길동 (054-****-****)
품종	부사		
등급	④ 특 상, 보통	내용량 (개수)	5kg(13개)
산지	국내산		
* 세척 후 드세요			

일반품(표준규격품 문구 없음)			
표시사항			
품목	사과	생산자	사과작목반 홍길동 (054-****-****)
		내용량 (개수)	5kg(13개)

○ 표시사항: ①“표준규격품” 문구 ②품목 ③산지 ④품종 ⑤등급 ⑥내용량
⑦생산자 명칭 및 전화번호 ⑧식품안전문구(세척 또는 가열)

○ 농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출하 농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사항이며, 출하자는 일반품 또는 표준규격품으로 선택하여 출하 가능

주: 표준규격품이 아니더라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 등 표시가 요구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5. 6. 16.

한편, 권장품질표시 제도는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 중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포장 겉면에 등급·당도 등의 농산물 품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즉, ① 농산물의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준수한다면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고, 표준규격에 맞지 않거나 표준규격이 없는 등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음.

반면, ② 수산물의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준수한다면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으나, 표준규격에 맞지 않거나 표준규격이 없는 등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산물과 달리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없음.

【 표준규격 준수 여부에 따른 법률상 표시 방식 】

연번	구분	표준규격 제정 여부	표준규격 준수 여부	표시제도		
				식품 표시	표준규격품 표시	권장품질 표시
1	농산물 (임산물 포함)	118개 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준수	의무	재량 단, 하나만 표시 가능	재량
			미준수	의무	불가	재량
		미제정 (그 외 품목)		의무	불가	재량
2	수산물	10개 품목만 표준규격 제정	준수	의무	재량	불가
			미준수	의무	불가	불가
		미제정 (그 외 품목)		의무	불가	불가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4.

다만, 현행법은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데,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권장품질표시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는 상황임.⁸⁾

8) 이는, 비표준규격품에 대하여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가 적용되어, 최소한의 표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다만, 해당 표시에는 권장품질표시에서 하도록 하는 등급, 당도 등이 포함되지는 않음

나. 등급표준화 검사 개요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등의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⁹⁾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¹⁰⁾

이와 같은 의무 이행 및 조치의 일환으로서, 현재 일부 도매시장 개설자는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량미달, 생산자 미표시, 속박이¹¹⁾, 부패·변질, 비규격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검사하는 이른바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함.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의 경우, 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과 연계하여 수시적으로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등급표준화 검사를 진행함.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1) 겉으로 보이는 바깥쪽만 멀쩡한 물건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그보다 작거나 부실한 물건을 두는 일(국립국어원 우리말샘, 2025. 6. 16. 확인)

【 가락시장 등급표준화 검사 개요 】

□ 추진목적

- 가락시장 출하 농산물의 표준규격 준수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 등급표준화 검사의 내실화 및 고도화로 농산물 유통거래 질서 확립

□ 검사개요

- 대상: 가락시장 출하 농산물 전(全) 품목
- 주체: 도매시장법인 자체 검사(수시) 및 공사 특별검사
- 방법: 품목별·출하자별 무작위 표본 검사
- 단속: 중량미달, 생산자 미표시, 속박이, 부패·변질, 비규격 포장재 사용 등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환경조성본부 식품안전팀, 2025. 6. 16.

참고로, 가락시장의 등급표준화 검사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적발된 출하자에 대하여 적발 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고, 처분내역을 시장 내의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공유함.

【 가락시장 등급표준화 검사 - 적발 출하자 행정조치 기준 】

적발횟수	행정조치	비고
1차	주의	○ 적발 출하자(또는 단체) 대상 행정 조치장 우편 발송 ○ 적발 출하자 명단 등 적발내역 공사 전산 관리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조합 등 처분내역 공유
2차	경고	
3차	1개월 출하정지	
4차	3개월 출하정지	

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로 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환경조성본부 식품안전팀, 2025. 6. 16.

2024년에 가락시장에서는 총 39만 3,494건의 등급표준화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총 760건이 적발되어 0.19%의 적발률이 나타났으며, 적발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음.

【 2024년 가락시장 등급표준화 검사 현황 】

(단위: 건, %)

연번	구분	적발실적		조치유형		
		검사건수	적발건수	소계	주의	경고
1	전체	393,494 (100.0)	760 (0.19)	760 (100.0)	717 (94.3)	43 (5.7)
2	과일	151,976 (100.0)	216 (0.14)	216 (100.0)	213 (98.6)	3 (1.4)
3	채소	241,518 (100.0)	544 (0.23)	544 (100.0)	504 (92.6)	40 (7.4)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환경조성본부 식품안전팀, 2025. 6. 16.

세부 적발사유를 살펴보면, 적발실적이 많은 순서대로 중량미달, 생산자미표시, 부패·변질, 속박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급표준화 검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가락시장 등급표준화 검사 적발유형별 현황 】

(단위: 건, %)

연번	구분	적발유형					
		소계	중량미달	생산자미표시	부패·변질	속박이	기타
1	전체	760 (100.0)	502 (66.1)	135 (17.8)	80 (10.6)	32 (4.2)	11 (1.4)
2	과일	216 (100.0)	91 (42.1)	47 (21.8)	46 (21.3)	21 (9.7)	11 (5.1)
3	채소	544 (100.0)	411 (75.6)	88 (16.2)	34 (6.3)	11 (2.0)	0 (0.0)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환경조성본부 식품안전팀, 2025. 6. 16.

다. 조문별 검토

1) 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표준규격품 등 표시 의무 신설

개정안은 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① 출하자에게 표준규격 및 권장품질표시를 의무화하고, ②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자의 품질 기준 준수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③ 표준규격등에 미달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출하자에게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안 제90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3(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등급표준화 검사 등) ①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 및 제5조의2에 따른 권장품질표시(이하 “표준규격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표준규격등 품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관계 조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당도 등 품질을 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한다)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③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0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생 략) <u><신 설></u> 3의2. (생 략)	3. (생 략) <u>3의2.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등에 미달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u> 3의3. (생 략)
4.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5.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6.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생 략)	

(1)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출하품의 규격화를 통한 신뢰도 확보 및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함.

다만,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 중 표준규격품 등을 표시하는 출하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품질표시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과태료 부과는 출하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이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표준규격 표시 위반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¹²⁾ 과태료의 수용이 곤란함.

② 해양수산물

수산물은 어획으로 생산되어 상품의 균일성이 낮고, 빠른 선도(鮮度) 변화 등의 특징으로 농산물에 비하여 품질 규격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 수산물만 표준규격을 규정함.

이와 같이 수산물 대부분의 등급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표준규격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경우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수산물과 그 포장재는 수분기와 염분이 많아 현실적으로 표준규격품 등을 표시하기 어려우며, 표시에 따른 시간 소요에 따라 수산물의 선도 및 상품성 유지 측면이 우려되므로, 수용이 곤란함.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 검토의견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전국 49개 도매시장의 거래규모는 물량 기준 672만 2,229톤, 금액 기준 17조 1,593억원으로 나타남.

【 전국 도매시장 거래규모(2023년 기준) 】

(단위: 톤, 억원)

연번	구분		거래물량	거래금액
1	총계		6,722,229	171,593
2	중앙도매시장	청과	3,959,215	90,354
		수산물	253,322	13,278
		소계	4,212,537	103,632
3	지방도매시장	청과	2,336,545	58,915
		수산물	45,484	2,872
		축산물	64,747	1,381
		양곡	29,347	738
		약용	331	43
		소계	2,476,454	63,950
4	민영도매시장	청과	1,887	59
		축산물	31,351	3,952
		소계	33,238	4,01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2024. p. 3.

그런데,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일부 도매시장 개설자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품질관리 제도가 현행 「농안법」에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권장 품질표시(이하 “표준규격품표시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진 농수산물만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도매시장 내 모든 출하 농수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표시등이 이루어진다면, 포장 겉면만을 확인하더라도 품목·품종·등급·생산자·내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품질관리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임.

특히,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은 농수산물이 입하되기 전 혹은 농수산물을 경매에서 낙찰받기 전까지는 출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품질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비대칭적 상황에 놓임.

개정안과 같이 표시를 의무화한다면 포장 겉면에 표시된 등급이나 당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른 표시 의무 중 ‘권장품질표시’는 ① 수산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② 농산물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기준·방법 등을 정하지 않아 운영되지 않음.

이에 따라,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는 의무적으로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여야만 하므로, 취지와 달리 표준규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이 경우, 표준규격을 준수하지 못하는 농수산물은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모든 농수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준수 자체가 불가능한 농수산물도 있음.

특히 수산물의 경우 단 10개 품목에만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10개 품목 외의 수산물은 표준규격 부재에 따라 도매시장 출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임.

둘째,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권장품질표시 제도는 출하자가 자율적으로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재 출하자는 농수산물을 표준규격(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춘 후 표준규격품을 표시하여 출하할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지 않더라도 권장품질표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님.

그런데 개정안은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규격품표시등을 하도록 하므로, 운영 중인 제도가 ‘자율제’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의 ‘조건부 의무제’로 변화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표준규격품표시등 제도의 성격 변화 】

연번	출하지	현행	➡	개정안
1	도매시장 출하	자율 표시	➡	의무 표시
2	도매시장 외 출하	자율 표시	➡	자율 표시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9.

물론, 권장품질표시의 경우 표준규격 준수와 무관하게 단순히 포장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당도 등의 품질을 표시하면 되므로, 조건부 의무제에 따른 출하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현재 권장품질표시 제도가 전혀 운영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도매시장 내 품질관리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권장품질표시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현실이고, 표시제도의 자율적 참여 성격과도 상충될 수 있다는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수산물은 권장품질표시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 또한 10개에 불과하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따라, 우선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용하되, 제도의 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수산물 확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표준규격품표시등 제도는 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축산물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임.¹³⁾

따라서, 개정안 역시 축산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을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38조의3제1항에서 “농수산물”을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38조의3제1항에서는 ‘표준규격 및 권장품질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표준규격등’으로 약칭하는데, 권장품질표시처럼 표준규격도 해당 농수산물이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따라서,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권장품질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표준규격품표시등’으로 약칭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변경된 약칭 등의 사항은 등급표준화 검사와 수탁 거부사유에 대하여 정하는 개정안의 다른 규정에서도 적용되는데, ‘표준규격등’이 아닌 ‘표준규격품표시등’을 검사하더라도 내용상 달라지는 측면은 없으므로, 자구를 수정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농물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당도 등 품질을 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한다)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넷째, 안 제38조의3제1항에서는 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 ‘및’ 권장품질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두 제도는 보완관계에 있는 제도로서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권장품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¹⁴⁾

따라서,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권장품질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다섯째, 안 제90조제3항제3호의2에서는, 안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등에 미달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런데, 안 제38조의3제1항에서 출하자에게 부여하는 의무는 ‘표준규격등에 미달되는 농수산물의 출하 금지’ 의무가 아니라 ‘표준규격등의 표시’ 의무임.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 실체규정상에서 부여하는 의무와 그에 대한 과태료를 대응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의 문언대로라면 표준규격등에는 부합하나 표시를 하지 않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는 표시를 통하여 도매시장 내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품질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어려워 보임.

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②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규격등에 미달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가 아니라
‘표준규격품표시등을 하지 않은 농수산물 출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임.

2) 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등급표준화 검사

개정안은 ①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②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의 출하자에게 출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출하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안 제90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3(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등급표준화 검사 등) ① . ② (생 략)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등급표준화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등급표준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현 행	개 정 안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신 설> 3의2. (생 략)	3. 제38조의2제2항 또는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3의2. (생 략) 3의3. (생 략)
4.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5.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6.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1)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출하품의 규격화를 통한 신뢰도 확보,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설자에게 등급표준화 검사를 의무화하고, 출하제한 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② 해양수산부

표준규격품 등의 표시에 대하여 수용이 곤란함에 따라, 이를 수용함을 전제로 하는 등급표준화 검사의 수용 역시 곤란함.

(2) 검토의견

현재 가락시장 등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시장 내 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중량미달·생산자미표시·부패·변질·속박이 등을 검사하여 적발하는 ‘등급표준화 검사’를 진행하고, 적발된 자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함.

개정안은 일부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등급표준화 검사를 법률로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앞선 내용인 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품등표시 의무 신설과 연계하여 제도를 규정함.

또한,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① 해당 도매시장 내 1년 이내의 출하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② 해당 도매시장 외의 다른 도매시장 또한 출하제한 조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의 취지는 표준규격품등표시 의무를 위반한 출하자를 등급표준화 검사를 통하여 적발한 경우, 위반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도매시장 출하를 금지하고 그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38조의2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등급표준화 검사에 대하여 규정함.

【 현행법 제38조의2와 안 제38조의3 비교 】

현행법 제38조의2	안 제38조의3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u>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u>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8조의3(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등급표준화 검사 등)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u>표준규격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등급표준화 검사</u>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등급표준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u>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u>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u>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u>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현행법 제38조의2	안 제38조의3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u>그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 ⑥ 제3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현행법 및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7.

개정안의 앞선 내용인 표준규격품등 표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출하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개정안과 같은 등급표준화 검사 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출하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이 규정하는 등급표준화 검사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 유사 제도인 현행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에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는 농수산물은, 이를 소비하는 국민의 신체·건강 등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품질에 관한 표준규격품표시등 의무 위반에 비하여 제재의 필요성이 보다 강할 것임.

그런데, 개정안은 등급표준화 검사에 따른 제재조치로서 ① 안전성 검사와 동일한 1년 이내의 출하 제한과 함께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성 검사에 비하여 강한 수준의 제재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이 추가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는, 단순히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등 업무 관련자에 한정하는 공개가 아닌 일반 대중에 대한 공개에 해당함.

따라서, 안전성 검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개정안이 규정하는 등급표준화 검사에 따른 제재조치의 정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등급표준화 검사의 제재조치로서 위반 횟수에 따라 주의부터 3개월 출하정지(제한) 처분까지를 규정함.

둘째, 개정안의 자구 중 안 제38조의3제4항에서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는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해당 문언은 안전성 검사에 관한 현행법 제38조의2제2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성 검사에서는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는 표준규격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므로, 이와 대응하도록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제재조치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도매시장법인 등의 농수산물 수탁 거부금지 등 사유 추가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등급 표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탁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u><신 설></u>	<u>3의2. 제38조의3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u>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관계기관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출하품의 규격화를 통한 신뢰도 확보,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함.

② 해양수산부

표준규격품 등의 표시에 대한 수용이 곤란함에 따라, 이를 수용함을 전제로 하는 수탁거부 금지의 예외사유 추가 역시 수용이 곤란함.

(2) 검토의견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게 법률상의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하(入荷)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개정안은 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표준규격품표시등을 의무화하고,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급표준화 검사를 하도록 함에 따라,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 미달인 농수산물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그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전체적인 취지는 표준규격품등표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농수산물이 도매시장 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수탁거부 금지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지 않는다면,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검사에서 적발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없어, 해당 농수산물이 도매시장 내에서 유통되게 됨.

따라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 미달인 농수산물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물론, 해당 예외 사유는 표준규격품표시등 의무와 등급표준화 검사의 수용을 전제로 신설하는 사유이므로, 안 제38조의3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부칙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에 따라 출하자 대상의 홍보 및 계도, 도매시장 개설자의 검사 체계 마련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도매시장법인의 수탁 거부금지 사유를 신설하는 안 제38조제3호의2에 한하여는 그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을 수용함.

2) 해양수산부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이 곤란함에 따라, 개정안의 시행일에 대하여도 수용이 곤란함.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안 제38조의3제6항에서 등급표준화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이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준비기간을 두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